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강 화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3.4.27)됨에 따라 제정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군수의 책무 및 자율방범활동 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경비 지원절차와 지원중단에 대해 규정(안 제6조, 제7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별도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032-930-3756, 팩스 032-930-3509,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서 제출 서식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해당 조항	의견	비고
○주소 : ○성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별도 첨부).